## <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Q&A >

## 잠깐!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

- ❖ 현재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거나.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나요?
- ❖ 현재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훈련기관에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을 받고 있나요?
- ❖ 최근 6개월 이내 유사한 정부/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나요?
- ❖ 최근 6개월 이내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나요?
- ⇒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 주세요!
- Q. 1회차 보고서 제출 전까지 구직활동 계획서에 작성했던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, 이런 경우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?
- A. 계획서상 세부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, ①입사지원 등 직접구직활동을 수행하거 나 ②고용서비스에 참여한 후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하면 구직활동으로 인 정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2월 한 달 동안은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 (worknet.go.kr/cyberedu)에서 본인의 희망 직종에 맞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.
- O.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, 어떤 자료를 첨부하나요?
- A. "본인 확인", "시점 확인", "활동 내용 확인"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, 기 관에서 공식 발부한 면접 증명서·학원 수강증,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셔 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기준(온라인청년센터 공지사항 52번)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.
- \* 증빙자료를 잘못 첨부할 경우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도 보고서가 부실처리될 수 있으니, 증빙자료 첨부 방법을 유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\* 증빙자료 파일은 하나만 첨부 가능하니, 파일을 여러 개 첨부해야 할 경우 하나 의 파일로 압축하거나 한글 문서(hwp)로 만들어 첨부해 주세요
- Q.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결과는 언제,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A. 다음 월 1일에 발표되며, **온라인청년센터 마이페이지**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Q. 현재 주 20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있는데, 근로 사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- A. 주 20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있더라도,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근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 근로계약서 첨부가 어려운 경우, 근로 사실 신고서(온라인청년센터 공지사항 32번)를 통해 근로 사실을 신고해 주세요

- Q. 일시불 30만원 이상 결제시 구직활동 보고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, 지원금 포인 트와 개인 예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??
- A. 포인트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.
- \*짧은 시간 동안 분할 결제를 통해 30만원 이상 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며, 신고 의무 회피를 위해 분할 결제한 경우 보고서가 부실처리됩니다.
- Q. 일시불 30만원 이상 결제하였으나 결제를 취소하였습니다. 신고 대상인가요?
- A. 신고 대상이며, 결제 취소 영수증을 포함하여 취소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.
- Q. 지원금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환급받았습니다.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?
- A.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현금 환급 사실을 신고하고, 사용한 현금의 사용내역을 **현금** 사용 확인서(온라인청년센터 공지사항 43번)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Q. 구직활동 보고서에 기타 신고사항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- A. (1) 취업·창업 예정 여부(회사로부터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경우), (2) 직업훈련 참여 여부, (3) 진학 관련 준비 여부 등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신고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.